수원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가단60180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3. D

변론 종결2016. 10. 6.

판결 선고2016. 11.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화성시 E 대 1,160㎡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2㎡의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8, 42, 4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181㎡를 인도하며, 2015. 11. 19.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3,900원씩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화성시 E 대 1,160㎡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1㎡,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1㎡,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94㎡의 각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8, 13, 14, 15, 18, 29, 41, 42,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414㎡를 인도하며, 2015. 11. 19.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6,300원씩을 지급하고,

다. 피고 D는 화성시 E 대 1,160㎡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20㎡ 및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3㎡의 각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8, 30, 31, 32, 33, 34, 37, 38, 39, 41, 29, 18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565㎡를 인도하며, 2015. 11. 19.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3,500원씩을 지급하고,

2. 원고에게, 피고 B는 669,500원, 피고 C는 1,531,500원, 피고 D는 1,567,5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화성시 E 대 1,1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2㎡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1, 2, 3, 8, 42, 4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181㎡를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1㎡,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1㎡,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94㎡의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8, 13, 14, 15, 18, 29, 41, 42,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414㎡를 점유하고 있다.

4)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20㎡ 및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3㎡의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18, 30, 31, 32, 33, 34, 37, 38, 39, 41, 29, 18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565㎡를 점유하고 있다.

5)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지료는 월 133,900원이고, 피고 C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지료는 월 306,300원이며, 피고 D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지료는 월 313,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G의 차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각자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고, 점유한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소유권취득일인 2015. 6. 19.부터 2015. 11. 18.까지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인 피고 B는 669,500원(133,900원 × 5개월), 피고 C는 1,531,500원(306,300원 × 5개월), 피고 D는 1,567,500원(313,500원 × 5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5. 11. 19.부터 피고들이 각자 점유한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 B는 월 133,900원씩, 피고 C는 월 306,300원씩, 피고 D는 월 313,500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였던 망 H이 묘지 벌초 등의 관리를 I, J 등에게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I, J 등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피고들에게 매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영각

별지